

제 정	2001.01.16.
개 정	2023.09.26.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식회사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 [2023.09.26.]

제 1 조 【목적】

이 규정은 관계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회사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, 운영,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【선임】

위원회의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제 3 조 【구성】

위원회 위원은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(단, 위원 총수 2/3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)

제 4 조 【위원장】

-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의로 선출한다.
-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 【위원의 임기】

위원의 임기는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와 동일하며, 임기만료 기타의 사유로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도 자동적으로 상실한다.

제 6 조 【해임 및 충원】

- 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-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위원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의 권리의무가 있다.
- 이사회는 제 2 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 종료시까지 결원된 위원을 충원한다.

제 7 조 【위원회의 소집】

-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, 늦어도 12시간 전에 이를 각

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모사전송방식, 구두, 기타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단,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8 조 【결의방법】

1.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2.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유·무선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.

제 8 조의 2 【부의사항】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위원장의 선임
3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 9 조 【의사록】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10 조 【권한】

위원회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주주총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한다.

제 11 조 【통지의무】

위원회의 결의된 사항을 결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2 조 【간사】

1. 위원회의 간사는 이사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2.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 13 조 【기타】

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 14 조 【규정의 개폐】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.

부 칙

부 칙 (2001.01.16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0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2.12.11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부 칙 (2023.09.26.)

제 1 조 이 규정은 2023년 09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 2 조 제 5조의 규정은 2024년 개최되는 제 47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소집하는
이사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부터 적용한다.